

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심사결과

연번	의안 번호	의안명	심사결과
1	2632	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	원안가결
2	2633	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	원안가결
3	2634	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4	2635	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	원안가결
5	2636	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6	2637	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7	2638	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8	2639	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 건의안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7. 9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관광과장)
- 제안이유
 - 축제위원회 외 단체에서 주최·주관하는 축제가 증가함에 따라 축제위원회에 한정된 조례를 확장하여 장성군 축제 발전 도모
 -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(안전관리, 사후평가 등) 반영
- 주요내용
 - 조례 제명 변경
 - (현행)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 - (개정) 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 - 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6조제4항)
 - (당연직) 황룡강사업소장 추가 / (위촉직) 안전전문가 추가
 -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 의무규정 신설(안 제15조)
 - 축제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규정 신설(안 제16조)
 -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및 공개제도 신설(안 제17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2.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- 제출일자 : 2025. 7. 9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세무회계과장)
- 제안이유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
- 이에,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함

■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취득·처분 계획 : 취득 1건(건물)

(단위 : m², 천원)

유형	사업명	소재지	면적	재산가액	비고
계	1개 사업		1,000	5,200,000	
건물	장성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	장성읍 영천리 1668-27 외 1필지	1,000	5,200,000	

- 공유재산 관리계획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필지수 / 동수	면적	재산가액	비고
계		1동	1,000	5,200,000	
취득	건물신축	1동	1,000	5,200,000	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7. 9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보건정책과장)
-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(총리령 제1916호, 시행 2024. 11. 23.)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▪ 주요내용

-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 및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 위임사항 명시(안 제1조)
- 수수료 징수 근거 변경(안 제4조제1항)
 - (현행)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.
 - (개정)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 및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.
- 증명발급 수수료 구체화 신설(안 제4조제3항)
 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.
- 별표 2 개정
 -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명시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4.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7. 9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인구경제실장)
- 제안이유
 - 장성군의 지속적인 생활인구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
- 주요내용
 - 조례의 제정목적(제1조), 용어의 정의(제2조)
 - 생활인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(제5조)
 - 장성사랑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(제6조)
 -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(제7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5.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7. 9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인구경제실장)
- 제안이유
 -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·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
- 주요내용
 - 청년 정책 사업 내용의 구체화(안 제18조)
 - 행·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(안 제19조)
 - (기존) (제16조)청년의 참여확대 (제17조)청년의 능력개발
 - (제18조)청년의 고용확대 (제19조)청년의 생활안정
 - (제20조)청년의 문화 활성화 (제21조)청년의 권리보호
 - (변경) 제16조부터 제21조를 통합하여
 - (제18조)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으로 하고
 - (제19조)에 각 호의 사업을 행·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음을 명시
 -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(안 제21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6.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7. 9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교통에너지과장)
- 제안이유
 -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운영 업무의 구체화, 교육에 관한 위임사항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

▪ 주요내용

-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(안 제12조제4항)
- 이동지원센터의 기능(안 제12조의1)
-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(안 제18조)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7.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25. 7. 9.

▪ 제 출 자 : 장성군수(농촌지원과장)

▪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·보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기능을 높이하고자 함

▪ 주요내용

-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(안 제5조제2항)
-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변경(안 제5조제3항)
- 사용기간 내용 간소화(안 제11조)
-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(안 제14조제1항)
- 사용료의 감면(안 제15조)
- 준용 법령 추가(안 제20조)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8.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 건의안

▪ 발의일자 : 2025. 7. 17.

▪ 발 의 자 : 최미화 의원

▪ 제안이유

-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대상 연령을 51세부터

70세로 제한하여 20대에서 40대 여성농업인과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

■ 주요내용

-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층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즉각 개정하라
- 농촌 지역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·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, 병원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